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42호 2011. 8 9(화)

포항시보

◀ 조 례 ▶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050호) 2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051호)..... 16
-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052호) 49

◀ 규 칙 ▶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545호)..... 54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제546호) 98
-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제547호) 102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48호) 104
-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49호) 107

◀ 고 시 ▶

-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제2011-70호) 116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1-72호) 118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11-749호) 120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조례 제 1050호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본부장·국장 및 담당관·팀장·과장의 직급 등)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의 본부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팀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본부·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화전략본부(한시기구)·자치행정국·경제산업국·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본부·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보건정책담당관을 둔다.
-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기업체 등과의 소통 및 주요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4. 보건정책담당관은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제5조(국제화전략본부에 두는 팀) ① 국제화전략본부에 국제협력팀, 지식산업팀, 해양항만팀·동빈내항복원팀·테라노바팀을 둔다.

- ② 국제화전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3.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일본,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지식산업 계획수립 및 추진
 6. 과학기술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7. 해양정책, 항만행정,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 8. 동빈내항 복원 총괄 및 추진
- 9. 해양신도시 건설, 송도백사장 복원에 관한 사항
- 10. 테라노바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11.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제6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새마을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지원과·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의식 및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
- 2. 지역안정대책 및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
- 3. 직제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
- 4. 공무원의 교양, 훈련 및 후생복지
- 5.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 시책개발
- 6. 공약사항 관리 추진상황 확인
- 7. 지방이양사무 및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8.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 9. 의회협력,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11.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평생학습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 12. 자원봉사 종합기획 및 추진
- 13.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관광지 개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15. 체육진흥,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6. 행정정보,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17.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노동과·기업유치과·산업단지지원과·재정관리과·수산진흥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노사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3. 근로복지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 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 5. 기업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6.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 7. 국내기업유치 및 민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8.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9.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10.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11. 세무행정, 회계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12. 수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 13.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저출산고령화대책과·여성가족과·환경위생과·청소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2. 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3.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4.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5. 여성정책 및 아동보육,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 6. 청소년복지·학교지원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
- 7.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9.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
- 10.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11. 녹색성장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12.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및 추진
- 1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14.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재난안전과·건축과·교통행정과·도시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행정의 종합 계획수립 및 조정
- 2.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지하도 설치

- 3.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 4.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대책
- 5. 지적 및 새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
- 6. 건축·주택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 7. 건축·주택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교통행정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 9. 도심지 녹지조성 및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 10. 육림 및 조림, 산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11. 공원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 12. 공원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의하여 남·북구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농촌지도·농민교육훈련·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16-1번지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2. 농업소득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도
3.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6. 농식품 유통정책 및 양곡관리의 종합기획 조정
7.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8.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
9.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도
10.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11. 농촌관광 및 마필산업 육성
12. 그 밖에 농축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환경사업소

- 가. 도시계획 사업(도로, 공원 제외)
- 나. 택지개발 사업(공영개발)
- 다. 일반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건축)공사의 시행
- 라. 영일만항 배후지역 조성 및 개발
- 마. 하수도사업의 종합관리
- 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운용
- 사. 하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조사 및 계획
- 아. 하수도시설 설치·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차. 하수(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및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 카. 하수처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타.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파.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시행,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2. 상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사업의 종합관리
- 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운용
- 다.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조사 및 계획
- 라.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
- 마. 송·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
- 바. 취수 및 송·급수에 관한 사항
- 사.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 아.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 자.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차. 가압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카.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 가. 도서관 시설 및 관리
- 나.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정리·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
- 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시립미술관
 - 가. 미술관행정의 종합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미술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미술관 전시종합계획 수립
 - 라. 국내·외 전시기획 및 해외미술관 공조, 자료수집
 - 마.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 서울사무소
 - 가.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교류 통로개설
 - 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활동
 - 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정책자료 수집
 - 라. 재정 출향인 활동지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
 - 마. 그 밖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여성문화회관
 - 가. 여성에 대한 직업 보도 및 교육
 - 나. 여성에 대한 교양강좌
 - 다. 영유아 수탁사업
 - 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 마. 그 밖에 여성 및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7. 공원관리사업소
 - 가. 공원의 종합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다. 환호해맞이공원에 관한 사항
 - 라. 보경사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마. 꽃도시 만들기, 도심시설녹지 점용 등 관리
 - 바. 도시경관림, 도심 녹지대 관리
- 8. 차량등록사업소
 - 가. 자동차의 등록

- 나. 건설기계의 등록
 -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 마. 차량 및 건설기계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9.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유통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 및 농산물 출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구청장) ①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읍·면·동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

장(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을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산업팀”을 “지식산업팀”으로 한다.

②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③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예술회관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녹지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포항시남구보건소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	남 구
포항시북구보건소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3	북 구
구룡포읍보건지소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30-3	구룡포읍
연일읍보건지소	남구 연일읍 괴정리 289-1	연 일 읍
오천읍보건지소	남구 오천읍 문덕리 27	오 천 읍
대송면보건지소	남구 대송면 제내리 335-15	대 송 면
동해면보건지소	남구 동해면 도구리 648-2	동 해 면
장기면보건지소	남구 장기면 읍내리 110-2	장 기 면
호미곶면보건지소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47-7	호미곶면
홍해읍보건지소	북구 홍해읍 남성리 123-12	홍 해 읍
신광면보건지소	북구 신광면 토성1리 340-1	신 광 면
청하면보건지소	북구 청하면 덕성1리 276-3	청 하 면
송라면보건지소	북구 송라면 광천리 32	송 라 면
기계면보건지소	북구 기계면 현내1리 284-2	기 계 면
죽장면보건지소	북구 죽장면 입암리 315	죽 장 면
기북면보건지소	북구 기북면 용기2리 177-2	기 북 면
구평보건진료소	남구 구룡포읍 구평2리	성동1,2,3리, 장길리, 구평1,2,3리
학전보건진료소	남구 연일읍 학전리	유강리, 자명,2리, 학전리, 달전리
용산보건진료소	남구 오천읍 용산1리	용산1,2리, 문충1,2리, 문덕2리, 향사, 갈평, 진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장동보건진료소	남구 대송면 장동2리	장동1,2,3리, 홍계리, 공수리, 남성2리
홍환보건진료소	남구 동해면 홍환리	입암1,2리, 마산리 홍환1,2리, 중흥리
금광보건진료소	남구 동해면 금광1리	금광1,2리, 신정1리
중산보건진료소	남구 동해면 중산리	상정2,3리, 중산리, 공당1,2,3리
모포보건진료소	남구 남구 장기면 모포리	모포1,2리, 금오리, 대진리, 학계리, 학곡리, 신계리
양포보건진료소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리, 계월1,2리, 수성리, 신창2리
두원보건진료소	남구 장기면 두원리	두원리
대동배보건진료소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발산2리, 대동배 1,2리
우목보건진료소	북구 흥해읍 우목리	죽천1,2리, 우목리, 용한1,2리
만석보건진료소	북구 신광면 만석2리	기일리, 마북리, 만석1,2리, 안덕1,2리, 반곡리
냉수보건진료소	북구 신광면 냉수1리	냉수1,2리, 흥곡1,2리
월포보건진료소	북구 청하면 월포리	용두1,2리, 월포1,2,3리, 이가리, 청진1,2,3리, 방어리
방석보건진료소	북구 송라면 방석1리	방석1,2리, 화진1,2리
상송보건진료소	북구 송라면 하송리	상송1,2리, 하송1,2리
조사리보건진료소	북구 송라면 조사리	조사리
구지보건진료소	북구 기계면 구지리	구지리, 가안1,2리, 남계리
상옥보건진료소	북구 죽장면 상옥2리	상옥1,2리, 하옥리
합덕보건진료소	북구 죽장면 합덕1리	합덕1,2리, 석계리, 월평리
상사보건진료소	북구 죽장면 상사리	상사리, 하사리
두마보건진료소	북구 죽장면 두마리	두마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 치
건설환경사업소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
상수도사업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86번지
시립도서관	○ 본관(포은도서관) :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 분관(영암도서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 ○ 분관(오천도서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3-11번지 ○ 분관(동해도서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37-8번지 ○ 분관(도서정보센터)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시립미술관	○ 포항시 북구 환호동 35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01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여성문화회관	○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지구 4B1L
공원관리사업소	○ 포항시 북구 환호동 산63-1
차량등록사업소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3-1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2항 관련)

구 명	위 치	관 할 구 역
○ 포항시 남구청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1-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일월동, 송정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장흥동, 인덕동, 호동,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동 (3읍, 4면, 17개동)
○ 포항시 북구청	○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1-2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죽도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1읍, 6면, 24개동)

1.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감사전담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총괄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총 계			변동없음
본 청	1본부 4국 2담당관 29과(팀)	1본부 4국 4담당관 29과(팀)	△3과 +3과(담당관)
의 회	1국 4전문위원(5급) 3전문위원(6급)	좌 동	-
직속기관	3직속 6과	3직속 7과	+1과
사 업 소	4급사업소 : 2소 7과 5급사업소 : 8소 (6급사업소 : 1소)	4급사업소 : 2소 6과 5급사업소 : 6소 (6급사업소 : 1소)	△3과(소)
구 청	2구 12과	좌 동	-
읍 면 동	4읍 10면 15동	좌 동	-

나. 기구의 신설

- 시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스마트시정』 구현을 위한 ⇒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 「보건정책담당관」 신설

다. 기구의 폐지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관련업무 추진
-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 업무시설과에서 관련업무 추진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운영
- 「노인복지회관」 (6급) ⇒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운영

라. 기구의 분리

- 건 설 과 ⇒ 「건설과·도로과」
- 농축산과 ⇒ 「친환경농정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마.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

-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5급) ⇒ 6급 사업소

바. 기구의 명칭 변경

- 녹색성장팀 ⇒ 지식산업팀
- 보건행정과(보건소) ⇒ 보건관리과
- 시설과(건설환경사업소) ⇒ 업무시설과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조례 제 1051호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과,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권 명	근 거 법 령
지식산업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다. 사업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신고의 수리 라. 사업의 허가취소 등 마. 사업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바. 과태료 부과징수 사. 사업 휴지 등의 신고 아. 과징금 부과 자. 공급자의 의무 차. 허가관청 등의 조치 카. 시설의 개선·안전 유지 2. 고압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소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사업의 지위승계 신고 다. 사업의 허가 취소 라. 사업의 과징금 부과징수 마.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바.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수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5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지식산업팀	사.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아. 사업의 과태료 처분 등 자. 사업휴지 등의 신고 차. 공급자의 의무 등 카. 사용신고 등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 43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20조
테라노바팀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공연간판, 돌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중 안전도검 사 대상 광고물)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위임사무에 한함) 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바.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위임사무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음·면·동강 포함)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 나.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복무 2. 구, 음·면·동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휴직, 면직, 직위해제, 시보해제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p>자치행정과</p>	<p>3. 5급 이하 구, 읍·면·동 공무원의 재직증명 발급 4. 구, 읍·면·동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 나.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다. 5급 이하 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정보 및 보직 (단, 5급은 시장 사전승인) 5.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읍·면·동 배부 나.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다.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마. 주민등록 사실확인, 정정, 말소의 이의신청 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시장도 가능) 6.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구, 읍·면·동)</p>	<p>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30조 전자정부법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p>
<p>새마을 평생학습과</p>	<p>1.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자대상사업 선정 나. 용자금 대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다. 용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 라. 감독 마. 용자금의 반환 및 통보</p>	<p>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과	<p>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나. 일반게임제공업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다.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신고 라. 허가증, 등록증 교부 마. 영업지위 승계자의 신고 바. 폐업 및 직권말소 사. 사후관리 아. 허가·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명령 자. 과징금 부과 및 운용계획 수립 차. 폐쇄 및 수거 카. 영업폐쇄명령, 허가 또는 등록 취소의 청문 타. 과태료 부과·징수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나. 등록증 교부 다.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등록증 갱신 교부 라. 영업의 승계 신고 마.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바. 등록취소 등 사. 과징금 부과 	<p>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26조제5항 같은 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8조</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3조제4항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과	아. 폐쇄 및 수거 자. 과태료 부과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다. 등록증 교부 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갱신 교부 마. 폐업 및 직권말소 바. 등록취소 등 사. 과징금 부과 아. 폐쇄 및 수거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4.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나. 연소자 유해선전물 폐기 등 다.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에 관한 사항 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9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6조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42조

소관부서	진 명	근 기 범 령
문화예술과	가. 출판 및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나. 불법복제 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 등 다. 과태료 부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관광진흥과	1. 관광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변경신고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 휴·폐업 재개업 통보 라. 신고 취소 등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제86조
정보통신과	1.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구, 음·면·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관리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 나. 부과취소 및 변경 다. 납기전 징수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취소 마. 가산세 부과·감면, 가산금 징수 및 독촉 바. 체납처분 사. 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제98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재정관리과	<p>아. 관허사업의 제한</p> <p>자.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채납액의 징수유예)</p> <p>차. 지방세환급금의 처리</p> <p>카. 소멸시효</p> <p>타. 서류의 송달</p> <p>파. 공시송달</p> <p>하. 징수촉탁</p> <p>거. 공탁</p> <p>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p> <p>더. 납세증명서 발급</p> <p>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p> <p>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p> <p>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p> <p>나.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검증</p> <p>다.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p>	<p>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p> <p>같은 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p> <p>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p> <p>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p> <p>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p> <p>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p> <p>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p> <p>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34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재정관리과	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3. 세외수입과징 및 감액결정, 반환 4. 수입증지 수불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수산진흥과	1.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어촌어항법 제35조
주민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활장려금 지급 및 통계관리 2. 행려사망자 처리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구호 4.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5.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조사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다. 조사결과 보고 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대한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1조, 제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p>6.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수당 지급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p>	<p>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p>
<p>지출산 고령화 대책과</p>	<p>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인복지 시설 긴급 상담 및 입소 2.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계획 수립 나.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조사 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라.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처리 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p> <p>3. 경로당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급 나. 경로당 개보수사업</p> <p>4. 장사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묘지의 일제조사 나. 사설묘지·사설납골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동 폐지신 고(개인, 가족, 종중·문중에 한함)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 마. 무연분묘의 처리</p>	<p>노인복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p> <p>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바. 장래식장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사. 사실포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 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여성가족과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나.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및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위생과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단, 폐기물처리업소, 건설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 재활용신 고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2.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업소 관리 3.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단, 폐기 물처리업소, 건설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신고 업소에 대한 권한 제외) 가.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나.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 불이행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다.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배출자 실적 보고 및 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위생과	<p>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p> <p>5. 분뇨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지도감독</p> <p>6.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나. 개선명령 등</p> <p>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이하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마. 과태료 부과징수</p> <p>8.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p> <p>9.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 출입, 검사, 서류열람 라. 위생지도, 개선명령 마. 청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및 과징금 처분</p>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제15조제1항</p> <p>하수도법 제44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p> <p>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p> <p>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80조</p> <p>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p> <p>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위생과	<p>10. 식품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승계·신고</p> <p>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p> <p>다. 심야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p> <p>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p> <p>마.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제품수거 검사</p> <p>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p> <p>11. 다음의 출입, 검사등과 행정처분, 청문 등에 관한 사항</p> <p>가. 식품운반업</p> <p>나. 식용열음판매업</p> <p>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p> <p>라. 유통전문판매업</p> <p>마. 기타 식품판매업</p> <p>바. 식품냉동·냉장업</p> <p>사. 용기·포장류제조업</p> <p>1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p> <p>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p> <p>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p> <p>라.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p>	<p>식품위생법 제22조, 제25조</p> <p>같은 법 제22조</p> <p>같은 법 제17조, 제58조</p> <p>같은 법 제65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54조</p> <p>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p> <p>같은 법 제20조의2</p> <p>식품위생법 제32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토양환경보전법 제5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범 령
환경위생과	<p> 마. 토양오염의 신고 등 바.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토양오염 검사 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완료 보고, 위해성 평가 등 아. 대검행, 보고 및 검사 등 자. 과태료 부과징수 </p> <p> 13.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허가대상축산폐수 배출사업장, 공공환경 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업소,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외) 가.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p> <p> 14. 생활소음·진동관리(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중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0㎡ 이상, 총연장 2,000m 이상 공사장 제외)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요청 라. 보고 및 검사 등 마. 과태료 부과징수 </p> <p> 15. 지하수 업무중 환경부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 수질관리 업무전반 </p>	<p>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5, 제15조의6 같은 법 제24조, 제26조의2 같은 법 제32조 </p> <p> 악취방지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p> <p>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61조 </p> <p> 지하수법 제13조, 제20조 </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위생과	나. 지하수 이용공 및 폐물관리 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 등	같은 법 제13조, 제20조 같은 법 제18조
건설과	1. 공익사업용지매수에 관한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2. 지하수 업무중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의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의 조사 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라. 준공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사. 원상복구 등 아.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자. 출입조사 등 차. 타인토지예의 출입 등 카. 수수료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하수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1조
도로과	1. 도로 및 교량 보수, 기타 도로시설물(육교, 보도, 도로표지판 등 도로공작물 및 부속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운행제한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허가포함)	도로법 제23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범 령
도로과	3 도로굴착허가에 관한 권한	도로법 제38조
도시계획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표준지가격의 조사, 평가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해당구청 소관)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라.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아.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 3. 토지거래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나. 허가기준 다. 이의신청 라.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마. 선매 바.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사.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아. 이행강제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제121조 같은 법 제122조 같은 법 제123조 같은 법 제124조 같은 법 제124조의2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도시계획과	자. 과태료	같은 법 제144조
재난안전과	1.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2.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수의 점용 나. 토지의 점용 다.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변경 바.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사.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3. 점용료 등의 징수 4.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5. 허가의 제한 6. 원상회복 의무 및 면제 7.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8. 공익을 위한 처분 9. 토지등의 수용 10.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육지공유수면)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나.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다.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 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	소하천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2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9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재난안전과	11. 공유수면내 점·사용료의 징수 12.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3. 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 14. 안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특정시설 제외)	같은 법 제13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3조 같은 법 제3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건축과	1.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이하인 건축·대수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과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 (가항의 규모 및 가항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3 미만의 범위 내 증축포함) 다.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 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 제79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제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건축과	2.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본발급 업무중 다음의 권한 가. 대장 신규작성 나. 대장의 전환 및 합병 다. 대장기재사항 변경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2조 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17조 같은 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건축과	라. 대장 정정 마. 대장말소 바.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사.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및 보관 마.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바. 등기촉탁 3. 주차장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같은 규칙 제21조 같은 규칙 제22조 같은 규칙 제11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25조 같은 규칙 제26조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
교통행정과	1. 불법주정차 차량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나.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도시녹지과	1. 임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목등록(변경) 나. 임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 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처리 나. 사업의 대행	임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0조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소관부서	권	근거법령
<p>도시녹지과</p>	<p>3. 임목벌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목벌채 허가 및 신고 나. 임목벌채기간 연기 다.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라.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신고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p> <p>5. 산불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불예방 및 진화 나. 보상금의 지급 다. 임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6. 사유잡종재산 관리(임야) (단, 임목을 제외한 사유임야에 대한 매각, 교환, 증여 등 의 처분사항은 제외)</p> <p>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찰조사 나. 방제명령 다.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p>	<p>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p> <p>같은 법 제73조, 제74조 산림보호법 제23조, 제25조</p> <p>산림보호법 제38조, 제41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p>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법 령
도시녹지과	라. 방제 마. 단속 바. 위반자에 대한 조치 8.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같은 법 제74조
친환경농정과	1.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 나.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 다. 동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 거 범 령	수입기관
테리노바팀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출출,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중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 나.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단, 동지역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은 제외)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위임사무에 포함) 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바.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위임사무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제20조의2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나.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7조	읍·면·동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2. 6급 이하 읍·면·동 공무원 배치 3.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외의 사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주민등록법 제2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경제노동과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점용료) 부과 징수 2.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 점·사용 허가 및 취소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의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라. 관리운영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 " " " 같은 조례 제20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재정관리과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송달 및 독촉장 교부 나. 체납세 징수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 라. 시세 건당 3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마. 시세 건당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바. 시세 과세자료 및 과세대상자 조사	지방세 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재정관리과	<p>사.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 및 지정 아.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p> <p>자.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차.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p> <p>2.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 징수 결의,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p> <p>나. 수입증지 수불판매</p> <p>3.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p> <p>나.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p> <p>4. 지출원인행위 위임 금액</p> <p>가.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 공사 집행 나. 주민부담 2분의 1 이상인 공사 집행 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라. 제조, 용역, 토지, 물건의 매입, 기타 2,000만원 이하</p>	<p>같은 법 제1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터 제46조까지</p> <p>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p> <p>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p> <p>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 제8조</p> <p>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른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p> <p>같은 법 시행령 제34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p> <p>지방재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p> <p>“ “ “</p>	<p>읍·면장 읍·면·동장</p> <p>읍·면장 읍·면·동장</p> <p>읍·면·동장 읍·면·동장</p> <p>읍·면·동장 읍·면·동장</p> <p>읍·면장 읍·면·동장</p> <p>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p>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재정관리과	5.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시공유임야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읍·면·동장
수산진흥과	1.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제외)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중 설치기간이 6월 이 내인 것 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벌의 점·사용허가 다. 기타의 점용허가 라. 동허가의 고시 마. 공유수면내 점·사용료 등의 징수 바. 동권리, 의무의 이전 등 사. 원상회복 등 명령 및 필요한 조치 아. 조사 등 일반관리 3.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산종묘살포 신고수리 5. 어장의 관리의무 등(어장청소 또는 수산 종묘 살포에 관한 계획) 6. 어항(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산업법 제44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55조제1항 낚시어선업법 제4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어장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어촌어항법 제35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범 령	수입기관
수산진흥과	가. 어항내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화장실 및 어항시설 청소, 쓰레기 수거) 나. 어항내 보안등(작업등)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료, 보수 등)		읍·면장 읍·면장
주민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활장려금 생성 나. 자활근로사업 시행 및 급여지급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발급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거주지 변경 및 전·출입 관리 3. 저소득층 전세임주 보증금 지원 대상자 추천 및 관리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증명서 발급 나.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포항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1.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나. 부당수급 연금의 환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제발급 에 관한 사항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개장· 개장의 신고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라.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위임사무에 한함) 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위임사무에 한함) 바. 읍·면 소재 화장장 관리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제13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동장
청 소 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4. 읍·면 매립장 운영관리 5.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63조 같은 법 제14조,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같은 법 제4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6조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동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청 소 과	6. 음식물류폐기물감량업무사업장 지도점검 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자료 조사 8.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점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진 설 과	1.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읍·면장
도시계획과	1. 토지출입허가 2.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해당 읍·면·동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재난안전과	1. 재해방지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나.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다.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2.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제2항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재난안전과	가.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직장대 제외) 나.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 민방위대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 제20조 및 제39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39조 같은 법 제26조, 제39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건축과	1.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자금 대상자 선정 나. 자금용자 다. 상환금 회수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8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교통행정과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등 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등 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등 라. 정비명령 마. 운행정지 명령 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 사. 청문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4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소관부서	진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교통행정과	가. 신고접수 및 조사 나. 소재확인 다. 자진처리 독려 등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5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 "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도시녹지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34조	읍·면·동장 읍·면·동장
친환경농정과	1.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필증 교부 나.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 지도·감독 다. 읍·면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장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1.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통수단면 0.5㎡ 미만의 하수도 설치 나. 하수도 유지관리(통수단면 1㎡ 이하에 한함) 다. “가” 목 관련 관료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공용 공작물에 관한 공사, 부대공사, 사용의 제한, 타인의 토지예의 출입 등 라. 공공하수도의 방해행위의 금지 등 마. 재해시설의 설치 등	하수도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22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23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별표 3】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	비고
제정관리과	1. 시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처분(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의 시세체납에 관한 자동차 기계장비 압류·해지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차량등록사업소장

【별표 4】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구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 법령	비고
자치행정과	1.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 	

1.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 및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의 신설·폐지·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1, 2의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
 - 기구의 신설 :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 기구의 폐지 : 보건소 건강관리과(2),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6급)
 - 기구의 분리
 - 건 설 과 ⇒ 「건설과·도로과」
 - 농축산과 ⇒ 「친환경농정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
 -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5급) ⇒ 6급 사업소
-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
 - 도로신설·확장업무 분청(도로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 도로(농어촌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 개발행위허가사무 분청(도시계획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 민방위업무 분청(재난안전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 축산관련사무 분청(축산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2)
 - 농지전용신고업무 분청(친환경농정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조례 제 1052호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923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비 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7.5% 이내	30% 이내	24% 이내	10.5%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3%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1,960	623	37	210	260	306	524
정무직 계	1	1	-	-	-	-	-
시 장	1	1	-	-	-	-	-
일반직 계	1,555	494	24	133	156	258	490
2 급	1	1	-	-	-	-	-
3 급	-	-	-	-	-	-	-
4 급	12	5	1	2	2	2	-
5 급	96	34	4	5	12	12	29
6급 이하 계	1,446	454	19	126	142	244	461
별정직 계	26	1	-	24	1	-	-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26	1		24	1		
연구직 계	4	1	-	-	3	-	-
연구관							
연구사	4	1		-	3		
지도직 계	40	-	-	40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7	-	-	37	-	-	-
기능직 계	334	126	13	13	100	48	34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역		
국제화 전략본부	1	일반직 : 4급 1	2011.12.31	국제화 전략본부장

1.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 및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60명(변동없음)

나. 직종별 정원조정(변동없음)

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별표 3)

- 본 청 : 607명 ⇒ 623명(+16명)
- 의 회 : 37명 ⇒ 37명(변동 없음)
- 직속기관 : 170명 ⇒ 210명(+40명)
- 사 업 소 : 291명 ⇒ 260명(△31명)
- 구 청 : 324명 ⇒ 306명(△18명)
- 읍 면 동 : 531명 ⇒ 524명(△7명)

규 칙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규칙 제 545호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본부장·국장·담당관·팀장·과장의 직급,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팀장·과장은 본부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시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 1. 시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 2. 언론매체, 현장대화 등을 활용한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 3. 시민 주요 관심사항 및 민생탐방에 관한 사항
- 4.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
- 5. 주요 시정에 대한 IR활동 및 시민아이디어 발굴
- 6.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민원 ONE-STOP 처리 지원
- 7. 대외 협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처리 지원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1.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의 총괄·조정
- 2. 주요시정 및 시책대담에 관한 사항
- 3. 보도 및 시정 기록물 사진제작
- 4. 언론기관 취재협조
- 5. 열린포항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 6. 주요시정의 미디어 운영 및 관리
- 7. 인터넷 뉴스관리 및 운영
- 8.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 9. 그 밖의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1. 시 행정의 감사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 2. 지방세무 감찰
- 3. 시비 결산감사
- 4.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 5. 공무원의 징계요구
- 6. 민원사무 처리사항 검열
-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8.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 9.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재정심사에 관한 사항
- 11. 기술분야 감사에 관한 사항
- 12.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 13. 그 밖에 감사에 관한 사항

제7조(보건정책담당관) ① 보건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 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1. 보건정책개발 및 국비예산확보
- 2. 지역응급의료 선진화사업 추진
- 3. 공중보건 위기대응 대책본부 운영(신규 감염병 확산 등)
- 4. 보건관련 통계 생산관리
- 5.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6. 보건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8. 시민건강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9. 주요행사 의료지원 총괄
- 10. 그 밖에 사무 중 2개 보건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절 국제화전략본부(한시기구)

제8조(국제화전략본부) ① 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제협력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지식산업팀장·테라노바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해양항만팀장·동빈내항복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지방시설주사에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
3. 국제단체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 및 외빈방문에 따른 의전, 통·번역
5. 국제도시 및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
7. 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9. 일본, 중국 등 환동해권 관광객유치 및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10. 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식산업팀) 지식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부품소재산업 육성
3. 지식산업 R&D 인프라 확충
4. 지식산업 R&D 기관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
8.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9. 첨단과학기술산업 박람회 및 과학대중화 지원
10. 첨단의료 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12.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추진

- 13.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14. 집단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운영
- 15.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관한 사항
- 16. 연료수급대책 및 가스안전대책 수립
- 17. 석유판매업, 연탄제조업, 가스충전소 허가 및 지도·감독
- 18. 전기사업, 전력기술, 전기공사업 관리
- 19. 석유판매업소 계량기 점검관리, 승강기 업무에 관한 사항
- 20. 가스시설(고압, 액화) 허가 및 관리
- 21.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안전관리
- 22. 그 밖에 지식산업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해양항만팀) 해양항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항만개발 정책수립 및 추진
- 3. 항만개발 사업 지원
- 4.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
- 5.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
- 6.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업무 지원
- 7.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
- 8.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
- 9.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해양항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동빈내항복원팀) 동빈내항복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동빈내항복원 총괄 운영
- 2. 타워브릿지 건설 및 송도백사장 복원
- 3. 동빈내항복원 기관간 업무협의
- 4. 동빈내항복원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5. 동빈내항 복원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 6.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에 관한 사항
- 7. 동빈내항복원 주변 수변공간 개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동빈내항복원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테라노바팀) 테라노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종합추진
- 2. 테라노바 자문위원회 운영
- 3. 테라노바 디자인상 운영
- 4. 테라노바 프로젝트 대·내외 홍보
- 5.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 계획
- 6.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 7. 시가지 경관자원 조사,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 8. 광고물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9. 광고물 제작업자, 광고물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테라노바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3절 자치행정국

제14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새마을평생학습과장·관광진흥과장·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획예산과장·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2. 청내 의식 및 행사
- 3. 보안업무, 방위협의회 운영
- 4. 국내도시 간 교류업무
- 5. 시 하급기관의 지도·감독(구, 읍·면·동)
- 6. 지역안정대책 추진
- 7. 행정구역 조정
- 8. 지시사항 관리
- 9. 평통, 리·통·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
- 10. 기구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 11.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
- 12.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13.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 14. 사무의 위임 및 위탁
- 15. 공무원 교육훈련
- 16. 반상회 운영, 선거 및 국민투표
- 17.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18.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19. 여론조사 및 수집분석
- 20.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 21. 포항시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22.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6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수립
-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관리
-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 5. 전국(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 6. 동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 7.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에 관한 사항
- 8.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 1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 1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14.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15. 의회 부의안건(조례 제외) 관리
- 16.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조례 제외)
- 17.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18. 성과관리(BSC)에 관한 사항
- 19. 법제 및 소송업무
- 20.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보고·공포·재의요구
- 21.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

제17조(새마을평생학습과) 새마을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2. 새마을기념관 유지·관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 새마을문고·금고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5.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 시설물 관리
6.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관한 사항
7.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9.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관리
10. 민간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
11.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도민교육, 시민대학, 교양강좌 운영
1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15. 창구즉결민원, 민원서류 접수처리 및 심사
16.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7.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기획 종합계획 수립
2.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영화 및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
4. 게임·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원·박물관·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8. 문화예술단체 지원
9.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시설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1. 등록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12. 종교행사 지원 등 중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시책기획 및 종합계획수립
- 2. 관광사업 유치
- 3.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 4.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5.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6.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8. 지역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9. 권역별 관광개발 및 동해안관광벨트 추진
- 10. 관광 시설물 설치
- 11. 관광지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12. 테마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 13. 호미곶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개발
- 14. 문화관광축제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15. 호미곶 관광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제20조(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
- 4. 시민체전 및 체육활성화
- 5.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6.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
- 7.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8. 해양레포츠 시설 및 해양스포츠에 관한 사항
- 9. 프로축구 활성화
- 10. 체육시설물 설치, 관리 및 운영
- 11. 각종 경기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정보화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DB구축·운영
5.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운영
6.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7. 전산, 통신, 교환, FAX실 운영
8. 행정정보통신 장비 및 S/W 보급·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0.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
12.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제산업국

제22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노동과장·산업단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업유치과장·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경제노동과) 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및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지도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대책,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7. 통신 및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
8.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9.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
10. 노동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11.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12.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13.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14.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6. 전통시장 운영·지도,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 17. 상인조직 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제24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2.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 3. 포스코·철강산업단지·농공단지 등 협력 및 지원
- 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품질 향상 지원
-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관리, 공산품 단속
- 6.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 7. 기업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
- 8.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
- 9.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
- 10. 투자정보 분석, 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 11.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관리
- 12.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홈페이지 관리
- 13.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14. 국내외 자본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 15.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 16.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
- 17. 민자유치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8.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19.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추진

제25조(산업단지지원과)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영일만항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 2.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 3. 영일만항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4. 영일만항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영일만항 배후단지 개발 및 분양
6.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부품소재 단지) 조성
8.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상 및 토지수용
10.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
11.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국가산업단지(포항블루밸리) 및 지방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13.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영일만항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 관련 일반사항

제26조(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총괄 및 결산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5. 세외수입의 과정에 관한 기획, 조정
6. 수입증지 및 인증기에 관한 사항
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8. 시금고 관리 및 지도·감독
9. 지방세 세원조사
10.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의 기획 및 조사
11. 세입에 관한 사항
12.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비 출납보관
14. 시비 및 보조금 세출예산의 정리 결산
1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16. 복식부기 추진에 관한 사항
17. 각종 공사·용역의 도급계약
18.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19. 회계문서의 심사
20. 하부조직의 회계문서 검사·지도

- 21.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22.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 23.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24. 문화복지동 및 중앙제어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어업지도 및 어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 4. 수산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산증양식 및 제조·가공 육성사업
- 6.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7. 수산시설물 지원사업 관리
- 8. 어항개발에 관한 사항
- 9. 연안항(구룡포항)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어촌종합개발사업
- 11.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 12. 연안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3. 공유수면 관리, 점·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한 사항
- 14. 어촌어항 관광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15. 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16.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 17. 과메기산업특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절 복지환경국

제28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주민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총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평가
5. 주민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
6.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 및 관리
7.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도 감독
9.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10.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 및 관리
11.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2. 자활사업 관리 및 수탁에 관한 사항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구호 총괄
14.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15. 민생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16.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17. 의료급여 진료비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기획 및 추진
19.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21.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총괄

제30조(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노인복지법인·시설관리, 노인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일자리 시책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5. 저출산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출산장려정책 수립 및 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보육,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총괄
8.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관리
9.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
10. 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

- 11. 시립 화장장 운영관리
- 12.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 13. 보훈관련 시설물 관리
- 14. 삼일절, 현충일 등 추념행사 추진

제31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종합기획
- 2.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
- 3.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 4. 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
- 5. 여성단체 지도 및 교육
- 6.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 7.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 8.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관리
- 9. 민간·개인보육시설 인·허가 관리
- 10. 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
- 11. 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
- 12.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 1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4.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 15. 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
- 16. 아동·청소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 17.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 18. 아동보육시설 인가 및 감독
- 19. 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0.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
- 2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제32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 2. 환경영향 평가
- 3. 환경분쟁 조정
- 4.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 및 허가
7.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8. 수질오염 지도·감독
9.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10. 단독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감독
11.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1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14.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지도·점검
16.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
18. 환경학교 운영지도 감독
19.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0. 위생업소의 신고, 인·허가 및 지도

제33조(청소과)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3.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관리
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
11. 재활용수집단체 육성 및 보상금 지급
12.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
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14.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5.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

- 16.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 17.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 18.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제6절 건설도시국

제34조(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도로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2.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
- 3.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도로)
- 4. 공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 6. 지하수 조사개발·이용 및 보존관리
- 7.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20m 이상)
- 8. 타 기관(국가) 도로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 9.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인정 고시(20m 이상)
- 10.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1. 읍·면지역 시도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12. 읍·면지역 시도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 13. 자전거 도로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 14.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15.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20m이상) 등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 16.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하천, 구거 제외)
- 17.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하천, 구거 제외)
- 1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하천, 구거 제외)
- 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0.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항
- 2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6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
- 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3. 청원경찰(노점상) 복무관리
- 4.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20m미만)
- 5.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수립 및 노선인정 고시
- 6. 농어촌 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 7.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인정 고시(20m 미만)
- 8. 비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및 허가
- 9.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10. 도로점용, 공작물설치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 11.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12. 청원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 13. 운행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
- 14. 지방도(읍·면지역) 진출입로 연결허가
- 15.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6.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 17. 수로원 관리에 관한 사항
- 18. 공가선로 정비에 관한 사항
- 19. 도시계획도로(20m미만), 농어촌도로 등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제3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종합조정
-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 3.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 4.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 6. 택지개발계획 수립
- 7.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설계심의(공사 제외)
- 8. 취약지, 특수지, 소도읍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9. 그 밖의 지역개발 사업
- 10. 구, 읍·면·동 개발행정 지도, 조성
- 11. 주요 국책사업 지원
- 12. 온천 개발,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13. 지리정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14.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관리
- 15.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및 운영
- 16. 토지지가 조사, 부동산평가 업무
- 17. 지적에 관한 사항
- 18.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
-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20. 새주소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2. 인적재난에 관한 사항
- 3. 국가기반체제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4.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 5. 운하건설에 관한 사항
- 6.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에 관한 사항
- 7.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8. 풍수해 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9.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1.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12. 재해위험지구 업무에 관한 사항
- 13. 기상정보 및 강수자료 관리
- 14.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7. 긴급안전점검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반재난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시대비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7.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시행
28. 재난 예·경보시스템, 재난상황실 운영
2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3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31.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32.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3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5.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36. 하천감시 및 하천감시원 복무에 관한 사항
37.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39.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40. 하천제방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41. 소하천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3.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4. 국가 및 지방 2급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45.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제39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및 건축 관련 종합계획 수립
2. 건축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
4.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임대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및 업체관리
8.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복구와 관련된 사항
9. 건축위원회(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분양 및 임대)의 관리 및 행위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1.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2. 주택조합(재건축, 지역, 직장)의 설립·변경 및 해산인가
13.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 및 전매·전대 동의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의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15. 건축행정전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건축사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특별관리대상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8. 표준설계도서 및 건축자재 보급에 관한 사항
19. 항측반 운영 및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1. 농어촌지역 공가 정비에 관한 사항
22. 저소득영세민 주택전세자금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26.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고시
27.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청산, 해산
28.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29.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관리 처분계획 인가
30.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31.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40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종사자 교육
3.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5.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인가·면허 관리

- 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 7. 비상 및 특별수송대책 수립 시행
- 8. 견인업체의 지정 및 지도·감독
- 9.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처분
- 10. 시내버스 중·단기시책 수립
- 11. 시내버스 인가·면허에 관한 사항
- 12. 시내버스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 13.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
- 14. 택시 인·허가 및 취소처분
- 1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6.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및 취소처분
- 17. 화물터미널 인가·면허 및 지도단속
- 18.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등록 및 지도·감독
- 19.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관리
- 20. 무단방치 차량 및 무등록자동차정비·정비업작업범위 초과행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 21. 교통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 22.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 23. 교통영향평가 업무협의
- 24.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25.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26.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
- 27.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관리
- 28. 지능형 첨단 교통모델 도시건설 사업
- 29. 도시교통량 측정, 분석 및 교통

제41조(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시녹지 조성 기획·조정
- 2. 가로수 조성 기획·조정
- 3.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기획, 조성
- 4.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 및 조성
- 5.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 6.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

- 7. 조림 및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8. 공유림 관리(처분, 취득, 교환, 양여)
- 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에 관한 사항
- 10. 산림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 11. 산림보호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
- 12. 보안림 지정 및 해제관리에 관한 사항
- 13. 사방지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산림경영계획 인가
- 15. 녹지 및 산림관련단체 지도·육성
- 16.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대책계획 수립
- 17. 산림정화계획 수립 및 조정
- 18. 수목원 및 휴양림, 생태숲 조성 및 관리
- 19. 산림문화수련장 및 사방기념공원 조성 관리
- 20. 보호수·노거수 보호관리
- 21. 향토문화 숲 복원 및 정비관리
- 22. 등산로 조성
- 23. 산림문화축제 개발 육성
- 24. 산촌개발사업 육성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제42조(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업무

- 2. 공보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지도·감독
- 3. 예산편성 및 집행
- 4. 청사,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7.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8. 의료기사법에 관련된 사항
- 9. 의료기관 세탁물, 방사선발생장치 관리 및 지도
- 10.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 11. 법정 및 급·만성전염병에 관한 사항
- 12. 방역대책 수립 및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 13.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 14.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과 관련된 사항
- 15.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16.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17.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진단실시 및 구강보건 관련업무
- 18.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 투약 및 관리
- 19. 보건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환자접수, 진료비청구 및 수납, 진단서발급 등)
- 20. 노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 21. 국민건강증진 업무에 관한 사항
- 22. 성인병, 만성병관리, 방문보건사업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② 친환경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과장의 사무분장) ① 친환경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촌인력 육성
3. 농촌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
5.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비료, 농약, 농기구 및 농업자재 수급 조절
7.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 사업
8.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9.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10.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사무
12. 경지정리, 개간 및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13. 가뭄대책 및 재해복구사업
14. 농업용수 개발 및 10개년 계획 수립
15. 농업기반 조성사업
16.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7.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장려
18. 과수 및 화훼생산 지원사업
19. 상옥슬로우시티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2. 농촌지원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
3. 농업기술 홍보
4.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5. 농촌청소년,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육성지도
6. 농촌생활환경 및 의식주 생활기술지도(가정관리, 부녀자 조직운영, 농외소득활동, 소비자 교육, 도농교류, 가정원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7.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관련 종합행사 관장
8. 농업기술 정보화(IT) 사이버농업기술지도 및 농업경영 컨설팅
9.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및 관리

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가축개량증식
3.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4.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5. 축산단체지도
6. 축산단지조성 및 증축관리
7. 축산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가축위생 및 방역
9. 가축 및 축산물 수급조절
10. 축산농가 경쟁력 육성사업 추진
11. 축산물 가공업체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지도·감독
12. 가축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축시장 관리
1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14. 해외사료자원 개발사업 추진
15. 목야지 초지조성 및 사료의 수급조절
16. 낙농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공수의 복무 지도·감독
18. 동물약국 개설등록 처리 및 지도·감독
19.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0. 축산폐수처리 사업 및 사후관리
21.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22. 축산물 이력추적제 관리 감독
23. 축산물 유통관련 영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24. 축산물판매업 영업에 관한사항
25. 축산물유통업소 행정처분
26. 위반축산물 압류·폐기 또는 회수 조치 명령
27. 축산물 신고업소 폐쇄조치
28. 축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0. 축산물 원산지유통지도단속
31. 축산물 가격 관리
32. 축산물 브랜드 개발 육성지원
33.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34. 동물판매업 영업에 관한 사항

35.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6. 말산업 육성사업
37. 승마장조성 및 관리
-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쌀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식량작물, 영농기계화, 기상재해 등과 관련한 기술지도 및 교육
 2.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3. 원예,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4. 축산, 잠업기술 및 사료작물 재배지도
 5. 소득원 개발 및 특화사업지도
 6. 벤처농업, 생명공학기술농업(BT) 육성
 7.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장·단기계획 수립
 8. 작물병원 운영
 9. 수도 병충해 기본예찰소 운영
 10. 농업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대책지도
 11. 친환경농업을 위한 업무종합
 12.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
 13. 유망자원 확보 및 재배, 토종농산물 보급
 14. 시험포장 운영 및 연구개발
 15.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16. 과학영농시설의 시험운영(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17. 시험농장방문 견학안내 및 교육
 18. 그 밖에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유통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3.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4.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조사에 관한 업무
 5.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 및 지원
 6. 경상북도 지정 브랜드 관리 및 지원
 7.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8. 영일촌 브랜드 육성 및 지원
 9. 유통관련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10.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 11. 명품식품 육성 및 지원
- 12. 학교급식 지원 및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 13.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 14. 농특산물 판매시장개척
- 15. 막걸리산업(영일만친구)지원 육성
- 16.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 17.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 18. 추곡수매 및 하곡수매 업무
- 19. 산딸기축제관련 업무
- 20. 학교급식관련 운영위원회 관리
- 21. 종자업 등록관리
- 22.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관련업무
- 2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
- 24. 농식품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
- 25. 유통원예에 관한 사항

제47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48조(소장의 직급)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9조(과장의 사무분장) ①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 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시설과장
 - 가. 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 나. 일반서무 및 문서관리

- 다. 예산 및 기업회계
 - 라. 건설(건축)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 마. 택지개발(공영개발)
 - 바. 기술직이 없는 일반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행
 - 사. 도시계획사업 시행(도로, 공원 제외)
 - 아.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 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공 및 감독
 - 차.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대형건설공사의 시행
2. 하수도과장
- 가. 하수도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 나.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 다. 하수시설공사의 시행
 - 라. 하수시설 보수·정비 유지관리
 - 마. 배수시설 유지관리
 - 바. 하수도 대장작성 및 유지관리
 - 사. 하수도관거 정비에 관한 사항
3. 하수재생과장
- 가. 시설보호 및 경계
 - 나. 분뇨·하수처리 시설의 처리 및 관리
 - 다. 분뇨·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 라. 실험실 유지관리 및 분뇨처리 기술업무
 - 마. 구룡포하수처리장 및 흥해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행정과
- 가. 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 나. 일반서무 및 문서관리
 - 다. 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
 - 라. 상수도 예산 및 기업회계
2. 상수도과
- 가.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
 - 나.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
 - 다. 송·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

- 라.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 마. 간이상수도 업무 추진
- 바. 가압장 관리

3. 정수과장

- 가. 송수·취수·도수 및 정수시설의 관리
- 나. 상수도 배수시설의 관리
- 다. 급수조절
- 라. 먹는 물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관할 정수장 및 부대시설의 경비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50조(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건축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서무, 인사, 보안, 복무에 관한 사항
3. 상급기관 감사 수감준비 및 결과조치
4. 공무원의 교양 및 후생복지
5. 선거 및 국민투표
6. 반사회 운영, 자원봉사
7. 평통업무 협조
8. 바르게살기 운동
9. 행정장비 관리
10. 읍·면·동행정 지도·감독

- 11. 생활현장 순찰
- 12.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업무
- 13. 새마을사업, 개발행정, 자원봉사
- 14.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 15. 국민운동 및 건전생활 지원
- 16.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1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18.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 19. 구 행정심판 및 소송관련 업무 총괄
- 20.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 21. 공보, 선전, 출판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 22. 유통관련업소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3.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 24.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 2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 26. 용도, 영선에 관한 업무
- 27. 시유,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28. 복식부기 시범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29.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0. 축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31. 각종 통계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 32. 전산통계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3.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 34.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 35. 민원실 운영
- 36. 행정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 37.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업무
- 38. 제증명 발급
- 3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복지환경위생과)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민 복지시책의 수립실시
- 2. 구민 기초생활보호 및 구호

- 3.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 4. 가정복지행정 업무 추진
- 5.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 6. 복지대상 신규신청(보호변경)자 조사
- 7. 신규 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8. 복지상담실 운영 등
- 9.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 10.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11.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 12.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 13.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14.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15. 위생업소의 신고, 인·허가 업무
- 16. 부정·불량식품 단속
- 17.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 18.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 19.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
- 20. 환경관련 신고 허가
-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준공사무에 관한 사항

제54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세 제도의 운영
- 2. 도세 및 시세 부과징수
- 3. 도세 및 시세부과에 따른 국세 부과징수
- 4. 세무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5. 세정홍보에 관한 사항
- 6.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 7. 지방세 세원조사
- 8. 체납세 징수기획 및 홍보
- 9. 지방세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0. 지방세에 따른 국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1.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12. 세외수입의 종합관리

- 13. 수입증지 관리
- 14. 결손처분
- 15. 지방세 과세를 위한 과표업무 전반
- 16.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55조(산업과) 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공업에 관한 사항
- 2. 물가에 관한 사항
- 3. 계량기에 관한 사항
- 4. 전기에 관한 사항
- 5. 가스 등 연료업무
- 6. 중소기업지원, 국제통상지원 업무
- 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 8.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 9. 농업용수 개발
- 10. 농업기반조성 사업
- 11. 농산물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12. 농업재해 업무
- 13.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14. 농가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 15. 농업자재의 유통에 관한 사항
- 16.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
- 17. 농토(토양)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18.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 19.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실시
- 20. 영림계획 운영
- 21. 조림·사방사업 시행지도
- 22. 육림사업(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 22. 산림병해충 방지
- 23. 산림재해 방지
- 24. 산림재선충 방제 및 예찰에 관한 사항
- 25. 산불예방 및 진화
- 26. 산지정화 및 산지오염 방지

27. 부정임산물, 산림사범 단속
28. 읍·면지역 녹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9.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및 주산단지조성
30. 시유잡종재산(임야) 관리
31. 산림형질변경 허가·협의·신고에 관한 사항
32. 산림 관련 허가·신고 수리
33.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
34. 가로수 관리
35.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6. 국유재산 관리(농림부)
37. 그 밖에 녹지 및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제56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 지장물의 매수 및 보상
2.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5. 국토해양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
6. 상하수도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9. 병사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
11.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
12. 하천점용 허가
13. 지하수개발 신고·허가
14. 그 밖에 건설,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제57조(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신고, 협의 및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가설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철거 등의 신고
4.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위법시공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7. 건축물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8. 일반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 및 확인
10.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관리
13.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5.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통계 업무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발급용 도면작성
17. 지적측량 장비운영 및 관리
18. 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 지도·감독
19.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20.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21. 비법인, 그 밖의 단체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업무
22.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
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 실명제 관련 업무
25. 토지 이동지 조사 및 처리 업무
26.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산정업무
27. 토지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28. 토지고시 및 지가조사 관련 업무
29. 토지거래 등 규제에 관한 업무
30. 그 밖의 건축·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59조(부읍·면장)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은 총무 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다만, 흥해·연일·오천읍의 부읍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한다.

제60조(하부조직) ① 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연일읍·오천읍·흥해읍장 밑에 자치행정과와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공보,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3. 주민제도, 여론조사 및 동향보고
4. 공무원 복무단속
5. 이·반장 임명 및 해촉
6. 문서의 수발, 보존 및 보안사무
7. 행정장비 관리 및 행정사무의 개선
8. 선거 및 국민투표
9. 리행정 지도감독, 법제정비
10.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11. 통계조사, 민원서류 검열 및 공인관리
1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사업 및 그 밖의 사회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 체육진흥, 소도읍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청소년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7. 지적공부 정리 및 공시지가
18. 부동산 중개업 관리
19. 주민복지시책의 추진
20. 가정·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22. 방역·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민원봉사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2.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업무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
4. 수입증지 판매, 인장업 및 행정서사 지도·감독

- 5. 가족관계등록업무
- 6. 수형인 명부관리
-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8.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9. 진개, 분뇨처리 및 오물수거에 관한 사항
- 10.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단속
- 11. 그 밖의 청소·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산업행정의 종합조정
- 13. 농업단체 지도육성 및 산업업무에 관한 사항
- 14. 상공업 진흥에 관한 사항
- 15. 담배소매업 지정
- 16. 연료, 전기에 관한 사항
- 17. 물가안정대책 및 생필품 수급대책
- 18. 도량형기
- 19. 공예산업
- 20. 전국토공원화운동 추진
- 21.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단체지도
- 22. 근로자 복지향상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23. 직업안내소 및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
- 24. 저축관련 업무
- 25. 상설시장 사용료 부과 및 관리
- 26.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27.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 28. 도로·하천·제방·교량과 그 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29. 농어촌 주택개량
- 30. 농경지 정리
- 31. 그 밖에 민원·산업·건설·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업무과장” 을 “업무시설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7호 중 “업무과” 를 “업무시설과” 로 한다.

③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본문 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④ 「포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⑤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항, 제12조제1항, 제4항 중 “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화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7조제2항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구룡포 농업인상담소	남구 구룡포읍 놀태리 46-3	구룡포읍 일원
홍해읍 농업인상담소	북구 홍해읍 매산리 16-1	홍해읍 일원
연일읍 농업인상담소	남구 연일읍 생지리 287-1	연일읍 일원
오천읍 농업인상담소	남구 오천읍 문덕리 27	오천읍 일원
신광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0	신광면 일원
청하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청하면 덕성리 296-28	청하면 일원
송라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송라면 광천리 180-33	송라면 일원
기계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기계면 현내리 352	기계면 일원
죽장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죽장면 입암리 686-7	죽장면 일원
대송면 농업인상담소	남구 대송면 송동리 780-1	대송면 일원
동해면 농업인상담소	남구 동해면 도구리 648-2	동해면 일원
장기면 농업인상담소	남구 장기면 마현리 324-1	장기면 일원
호미곶면 농업인상담소	남구 호미곶면 대보2리 296-4	호미곶면 일원
기북면 농업인상담소	북구 기북면 용기리 102-3	기북면 일원
중부 농업인상담소	북구 두호동 1045-6	동지역

【별표 2】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제48조제1항 관련)

사업소명	소장	과 장	
		직 위	직 급
건설환경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업무시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재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상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수도과장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시립미술관	지방행정사무관		
서울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여성문화회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5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구룡포읍사무소	구룡포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연일읍사무소	연일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오천읍사무소	오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홍해읍사무소	홍해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송면사무소	대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미곶면사무소	호미곶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신광면사무소	신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청하면사무소	청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송라면사무소	송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기계면사무소	기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죽장면사무소	죽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기북면사무소	기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대동주민센터	상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기 관 별	직 위	직 급
해도동주민센터	해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송도동주민센터	송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림동주민센터	청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제철동주민센터	제철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효곡동주민센터	효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이동주민센터	대이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주민센터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양학동주민센터	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죽도동주민센터	죽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흥동주민센터	용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우창동주민센터	우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두호동주민센터	두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량동주민센터	장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환여동주민센터	환여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 및 공정하고 창의적인 클린 시정 기반 조성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과 그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의 신설 (안 제4조, 제7조)

- 시민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스마트시정』 구현을 위한
⇒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 「보건정책담당관」 신설

나. 기구의 폐지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관련업무 추진
-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 업무시설과에서 관련업무 추진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운영
- 「노인복지회관」 (6급) ⇒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운영

다. 기구의 분리 (안 제35조, 제36조, 제46조)

- 건 설 과 ⇒ 「건설과·도로과」
- 농축산과 ⇒ 「친환경농정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라.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안 제46조)

-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5급) ⇒ 6급 사업소

마. 기구의 명칭변경(안 제10조, 제43조, 제49조)

- 녹색성장팀 ⇒ 지식산업팀
- 보건행정과(보건소) ⇒ 보건관리과
- 시설과(건설환경사업소) ⇒ 업무시설과

바. 분장사무의 조정

- 감사담당관 ⇒ 기획예산과
 - 법제 및 소송업무
 -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보고·공포·재의요구
 -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
- 기획예산과 ⇒ 정보통신과

-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관리
- 도시계획과 ⇒ 산업단지지원과
 - 국가산업단지(포항블루밸리) 및 지방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녹색성장팀 ⇒ 환경위생과
 - 녹색성장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구청 건설교통과 ⇒ 도로과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20m미만)
 - 농어촌도로 신설 및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 공작물설치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 도시녹지과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구청 세무과 ⇒ 구청 건축지적과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산정업무
 - 토지개발 이익 환수제 운용
 - 토지고시 및 지가조사 관련 업무
 - 토지거래 등 규제에 관한 업무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규칙 제 546호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권 명	근 거 범 령
지식산업팀	<p>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에너지사용신고의 접수</p> <p>나.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78조</p>
환경위생과	<p>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p> <p>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p> <p>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p> <p>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p> <p>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단, 건물건설공사 2,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 10,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0㎡ 이상 또는 도로공사 총연장 2,000m 이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은 제외)</p> <p>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p> <p>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p> <p>같은 법 제11조</p> <p>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p> <p>제35조, 제36조, 제38조제2항</p> <p>같은 법 제37조, 제47조</p>
도시계획과	<p>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p> <p>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항</p> <p>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p>

1.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 및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의 신설·폐지·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의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
 - 기구의 신설 :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 기구의 폐지 : 보건소 건강관리과(2),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6급)
 - 기구의 분리
 - 건 설 과 ⇒ 「건설과·도로과」
 - 농축산과 ⇒ 「친환경농정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
 -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5급) ⇒ 6급 사업소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규칙 제 547호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한 정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1,960명 → 1,960명(변동없음)
- 기관별 직렬조정내역
 - 본 청 : 607명 → 623명(+16)
 - 의 회 : 37명 → 37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 170명 → 210명(+40)
 - 사 업 소 : 291명 → 260명(△31)
 - 구 청 : 324명 → 306명(△18)
 - 읍·면·동 : 531명 → 524명(△7)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규칙 제 548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 이내” 를 “9명 이상 12명 이내” 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금고지정) ① (생 략)</p> <p>1. (생 략)</p> <p>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단치 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 4.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2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해당 -----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생 략)</p> <p>1. (생 략)</p>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p> <p>3.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6조(구성) ① ----- -----9명 이상 12명 이내---</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 ----- -----그 밖에 ----- -----</p>
<p>제15조(금고의 중도 해지) ① 시장은</p>	<p>제15조(금고의 중도 해지) ① -----</p>

현 행	개 정
<p>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16조(자금운영 보고)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u>그 밖에</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자금운영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그 밖에</u>----- ----- ---</p>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
 - 당초 : 7명 이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8월 9일

포항시 규칙 제 549호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의” 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1인” 을 “1명” 으로, “회사별료” 를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노동조합만 설립된” 으로 하고,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정한다” 를 “인정한다. 여기서 매월은 해당되는 달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일수계산에 의한 1개월은 30일로 하며”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노조 전임간부” 를 “근로자” 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에 의한 사업장 전체 노동조합원수가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1명이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하였을 때는 단체의 수만큼 나눈 값을 적용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과반수 이하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노동조합원의 가입 비율에 만근일수를 곱한 일수만큼 경력을 인정하며(1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율 단위는 10퍼센트 단위로 하고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하며,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는 절사한다.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별표 1” 을 “별표 2” 로, “각호의 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고, “승락서” 를 “승낙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u>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제19조에 따라----- ----- ----- ----- -----</p>
<p>제2조(증차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 택시의 조사실차율을 기준실차율과 비교하여 증차하되, 이 경우 증차대수는 이미 면허한 대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p> <p>1. <u>교통량조사 시기는 3월로 하고 조사 대수는 택시메타기의 자료출력이 가능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각각 30~50대로 한다.</u></p> <p>2. <u>1일 운행거리가 일반택시는 300~600km, 개인택시는 150~300km로</u></p>	<p>제2조(증차기준) (삭 제)</p>

현 행	개 정
<p><u>하고, 4일간 평균운행실적을 기준</u> <u>으로 하여 산정한다.</u></p> <p>3. <u>기준실차율은 55퍼센트로 하고</u> <u>조사 실차율은 산정된 실차율에</u> <u>1퍼센트를 가산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천률 조</u> <u>사가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인</u> <u>정되거나, 주민의 택시예상 이용</u> <u>도, 외곽지주민 교통편의등 지역교</u> <u>통여건을 감안하여 증차 할 수 있다.</u></p> <p>제3조(면허발급기준) ① <u>면허를 받고</u> <u>자 하는 자(양수받고자 하는 자를</u> <u>포함한다)는 규칙 제19조제1항 및</u> <u>제2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이</u> <u>어야 한다.</u></p> <p>② <u>면허의 신규발급은 시장의 신</u> <u>규면허 모집공고에 의하여 개인택</u> <u>시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u> <u>위에 의거 발급하며, 신규면허모집</u> <u>공고는 7월에 시행한다. 다만, 시</u> <u>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u>는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5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 <u>운전경</u> <u>력 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u> <u>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u></p>	<p>제3조(면허발급기준) ① <u>면허를 받고</u> <u>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u> <u>람을 포함한다)는 「여객자동차 운</u> <u>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u> <u>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과 제2항</u> <u>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u> <u>한다.</u></p> <p>② -----<u>포항시장(이하 “시장”</u> <u>이라 한다)의</u>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 ----- -----<u>해당</u>----- -----</p>

현행	개정
<p>제8조(거주요건) ①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운전경력중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제4조와 관련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운전경력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u>당해</u> 사업구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자</p> <p>2. (생략)</p>	<p>제8조(거주요건)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 -----<u>해당</u>----- -----</p> <p>2.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사) 심사는 서류심사를 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u>당해</u> 업체 등에 조회를 하거나 현지 확인 할 수 있다</p>	<p>제10조(심사) ----- ----- -----<u>해당</u>----- -----</p>
<p>제11조(차고시설 기준) 개인택시 면허자는 규칙 제14조제1항 <u>별표1</u>의 기준에 의한 차고지확보 증명서류는 다음 <u>각 호의 1과</u> 같다. 단, 자기소유외의 지역 또는 시설은 사용자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u>승낙서</u></p>	<p>제11조(차고시설 기준) ----- -----<u>별표 2</u>-----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 -----<u>승낙서</u>-----</p>

현 행	개 정
<p>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기타</u> 차고로서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 : 소유증명서 및 위치 약도</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의</u> -----</p> <p>-----</p> <p>-----</p>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11. 7.1일부터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우리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노조간부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시증차는 사문화되어 삭제 하며, 법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의거 산정된 택시총량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함에 따라 사문화 된 증차기준에 관한 조항은 삭제
-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조의 복수 출범이 예상되어, 모든 노조간부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종전의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정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복수노조가 출범하지 않거나, 출범하여도 다수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수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노조간부는 비율에 따라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노조원이 1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 다. 운전경력 산정에서 현재까지 적용해온 매월과 일수산정에 있어 1개월을 30일로 명문화
- 라.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법원 및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원직에 복직되었을 경우 그 해고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재는 노조 전임간부로 한정된 것을 근로자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정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 -70 호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8월 3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 칭 :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
- 다. 면 적 : 2,772,02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 첨단기술 산업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 나. 주거·상업·업무·생산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복합단지 조성
- 다. 경제적, 합리적 계획수립을 통한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당 초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나. 성명 : 포항시장

○ 변 경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4 2층

나. 성명 :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주) 박 근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나.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포항시 고시 제2011-72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8. .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 명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연구시설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포항시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연구시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산1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 76,305㎡ - 변경 : 76,766㎡ ○ 건축면적 - 당초 : 7,571㎡ - 변경 : 5,411.88㎡ ○ 건축연면적 - 당초 : 11,778㎡ - 변경 : 6,960.37㎡	2010.6.24 ~ 2011.11.30	포항시장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단위 (m²)

번호	토지의 위치		지목	변경지적면적 (당초지적면적) (m ²)	변경편입면적 (당초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당초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곡	213 (213)	답	3,207 (3,207)	3,207 (3,207)		포항시			
2	성곡	213-1 (213-1)	과수원	3,391 (3,391)	3,391 (3,391)		영일군			
3	성곡	214-4 (214-3)	답	562 (2,957)	562 (690)		국(국토해양부)			
4	성곡	214-1 (214-1)	답	742 (2,957)	742 (742)		국(국토해양부)			
5	성곡	1356-26 (1356-16)	구거	552 (13,782)	552 (615)		국 (농림수산식품부)			
6	성곡	1356-29 (1356-16)	구거	50 (13,782)	50 (615)		국 (농림수산식품부)			
7	성곡	220-15 (산18)	임	58,049 (98,577)	58,049 (57,796)		영일군			
8	성곡	220-21 (산18-2)	임	145 (785)	145 (150)		영일군			
9	성곡	220-20 (산18-3)	임	77 (75)	77 (62)		영일군			
10	성곡	220-19 (산26)	임	1,637 (1,914)	1,637 (1,418)		포항시			
11	성곡	220-17 (산26-1)	임	3 (3,243)	3 (18)		국(국토해양부)			
12	성곡	220-18 (산26-1)	임	13 (3,243)	13 (18)		국(국토해양부)			
13	성곡	220-9 (산27-1)	임	1,096 (91,112)	1,096 (1,112)		영일군			
14	성곡	220-22 (산28-1)	임	2,935 (3,095)	2,935 (2,736)		영일군			
15	성곡	220-8 (산27)	임	4,115 (4,165)	4,115 (4,165)		영일군			
16	성곡	220-16 (산18-4)	임	143 (259)	143 (154)		영일군			
17	성곡	0-8 (0-8)	가	49 (49)	49 (49)		미등기			
계				76,766 139,568	76,766 76,305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5) 및 기업유치과(☎054-270-2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1 - 749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8. 09

- 1.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11. 8.09
- 2. 등록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신규 등록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항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분임물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정방형		신규 등록